

**건설사업관리 대가 및
감독자 배치 기준 개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4. 4.

국 토 교 통 부

= 목 차 =

I . 연구용역 개요	1
II .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6
III . 제안서 제출 및 작성	7
IV . 보안대책	8
V .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12
VI . 제안(과업)수행지침	17

붙임 : 제안서 양식(서식 #1 ~ 서식 #6)

I.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 건설사업관리 대가 및 감독자 배치 기준 개선 연구

2. 용역배경 및 목적

- '14년 5월 전면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제도마련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현재 실정에 맞추어 개선이 시급
 - 초대형 사업 증가로 건설사업관리기간 기준(최대 1,000억 원-54개월), 난이도 기준(2,000억 원 이하, 초과로 구분) 등 상향 필요
 - 시설물을 선형, 비선형, 건축, 플랜트 I·II로 구분하여 기술인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 시설물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의 기술직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가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적정 공사감독자 배치와 예산편성 시 새로운 기준 필요

* 현행 대가 기준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시설물, 난이도, 공사기간을 고려

3.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장기계속용역*)
 - * 1차 8.0개월(240일), 2차 4.0개월(120일)

4. 사업예산 : 100백만원(VAT포함) *(1차 70백만원, 2차 30백만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과업 수행

-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방식 및 공사 감독자 배치기준 문제점 조사·분석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요 업무 개선사항 도출
-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방식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7. 주요 연구내용

7.1.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방식 및 공사 감독자 배치기준 문제점 조사·분석

- 선행연구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한 대가 산정방식 문제점 조사 및 분석
 - 건설사업관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발주청의 공사 규모, 유형별 발주 현황을 조사·분석
 -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방식의 동향분석
- 공사 감독자 배치 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 공사 규모, 유형별 건설공사 감독자 배치와 건설사업관리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현행 기준과 비교 검토·분석
-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투입인원수와 공사비 효율방식에 의한 투입인원수의 적정성 비교검토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요 업무 개선사항 도출

- 기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를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입인원배치(안) 마련
 - 사회간접자본의 사후관리, 폐기물관리, 해체 및 폭파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 신규 업무와 공사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필요 업무 검토
 - 적정 인원수 산출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 공사관리관 인터뷰(설문)를 통해 건설공사 규모 및 유형별 기본 업무량을 조사·분석
- 물가인상 등 업무량 외적 요인이 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합리적 건설사업관리 대가 체계 검토 및 제시

7.3.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방식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 적정성 검토
 -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 연계성을 검토하고 건설사업관리기간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규모별, 유형별 적정기간 마련
 - 공사 규모별, 유형별 전문가 TF 운영,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한 발주청 의견수렴 및 개정안의 적정성 검증
-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인원수 및 보정계수 적정성 검토
 - 공사 규모, 유형별 표준모델을 설정하고 단위 물량별 기준인원 수와 보정계수의 교체·신규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 공사 난이도 분류와 난이도 산식 재검토
 - 공사난이도 구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의 건설공사 유형과 통일하고 난이도 등급, 해당 공종을 재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 기존 50억 원 이하, 2,000억 원 이상/이하 기준 난이도 산식을 공사 유형별로 재검토하고 금액 기준도 상향하는 등 세분화
-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필요사항 검토

7.4.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 소규모 건설공사의 감독자 배치 및 대가 기준안 마련
 - 소규모 건설공사의 범위를 공사 유형 특성별로 설정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상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마련
 - * 예) 복합공종의 건설공사에서 상주기술인을 최소 배치하고 해당 기술인의 직무분야 외의 공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
 - 소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량을 재검토하고 소규모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안 신설
 - * 소규모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통합건설사업관리에 따른 적정 대가 기준 및 적정 기술인수(감독자 배치) 산출 포함
 - 새로운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설사업관리 대가와 예산편성지침의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을 비교하고 기재부 협의(안) 마련
-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대상 개선안 도출
 - 도출된 건설사업관리 대가(감독자 배치 기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개정안 마련

- 현행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대상 공사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완 대책과 법률 개정안 마련

8. 과업수행 일정

1. 예정공정표

과업 내용	과업수행기간(12개월)						과업량
주요 과업 내용	2	4	6	8	10	12	소계
1. 세부 연구계획 수립	■						10%
2.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방식 및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 문제점 조사·분석	■	■	■				20%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요 업무 개선사항 도출			■	■	■		20%
4.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방식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	■		20%
5.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 제도 개선			■	■	■	■	20%
6.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10%
보고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100%

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 열람 및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82, 4592)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제안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제안 개요(배경, 목적,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
- 과업수행계획(과업 세부내용, 수행방법, 세부추진계획 등)
- 추진일정 등

나.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라.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가.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나.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협의하여 처리함

3. 유의사항

1)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IV. 보안대책

-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23.9.12)”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제한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11)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방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1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13)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14)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V.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재무구조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따라 평가	10	계량평가
	연구인력	- 연구인력(석, 박사 등) 보유현황	10	"
과업수행 부 분 (80)	제안서 개 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5	비계량 평 가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20	"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제안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과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
	국제 네트워크	- 해외 자료 수집 관련 현황분석 방안	10	"
	연구조직 구 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10	"
	기 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10	"
계			100	

가. 제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1)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	A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4
A0	A20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1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8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5
BBB0	A30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2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9
BB+, BB0	B+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7.6
BB-	B0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3
B+, B0, B- 이하	B-이하	B+, B0,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체별 평점을 산정한 후 제
안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sum(\text{업체별 평점} \times \text{지분율})$

2) 연구인력 보유현황(10점)

구 분	7인 이상	5~6인	3~4인	3인 미만
점 수	10	9	8	7

※ 석사박사급 참여 연구인력수

나.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 부	제안서 개요	5	5	4	3	2	1
	과업 접근방법	20	20	16	12	8	4
	수행계획	15	15	12	9	6	3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	10	8	6	4	2
	국제네트워크	10	15	12	9	6	3
	연구조직 구성	10	10	8	6	4	2
	기 타	10	5	4	3	2	1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2) 입찰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

VI. 제안(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360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과업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일정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반영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과 이를 원 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용역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책임자와 각 부문별 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사항

-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국토교통부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

5. 보고서 제출

5-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5-2. 보고시기 및 방법

- 착수보고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진도보고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용역추진 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 : 과업착수후 8개월 이내에 중간성과를 정리하여 보고 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20일전에 보고하고, 최종 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5-3. 과업 성과품

구 분	규 격	면 수	인쇄방법	부수
중간보고서	10절	100면 내외	마스타	5부
최종보고서	10절	200면 내외	마스타	30부
USB	USB	-	-	1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건설사업관리 대가 및 감독자 배치 기준 개선연구

업체명 : (인)

[서식#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징계사항			

[서식 #3]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 명	연 령	직 위	주 요 경 력 (관 련 분 야)	학 위 또는 자 격 사 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해당업체의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보유현황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연령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서식 #5]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서식 7】의 본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과업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표지(서식1 활용)
2. 제안서 내용(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2 활용)
4.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서식3 활용)
5. 연구진 이력사항(서식5 활용)
6. 청렴계약서(서식6 활용)
7.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